

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117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10. 15 최계몽의원 외 4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0. 15
- 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9. 10. 23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의결

2. 개정이유

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(2009.

4. 1)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방법 절차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조례 내용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서식을 정함.(안 제5조)
- 나. 의원은 「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경남도 정책기획관 - 4140호(2009. 4. 27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9. 4. 1.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지방의원의 겸직시 신고를 의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조 제6항에는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, 겸직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영리행위 제한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10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